구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2011년∼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8% 7% 7% 7% 7%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∼3년차 - - 8% 8% 8% 유예기간 이후 4∼5년차 - - 9% 9% 9% 100억원 이하 11% 10% 10% 10% 10% 1천억원 이하 11% 11% 12% 12% 1천억원 초과 14% 14% 14% 16% 17% \* 사회적기업(사회적기업육성법§2(1))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(2014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, 조특법§132①･②) \* 지역특구(조특법§12의2 및 121의8, 9, 17, 20~22)에 대한 감면 적용시 100%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, 50%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(’20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)